

排出賦課金制度

5. 排出賦課金 賦課 및 徵收節次

賦課金을 독촉장에 기재된 納付期限内에 納付하지 않을 경우에는 公賣에 의하여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며 市·道의 公賣擔當官은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가산금과 부과금을 公賣日로부터 2日内에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불입토록 되어 있다. 이 때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.

○ 부과금 징수권의 이관

부과금의 징수권은 배출시설을 관할하는 당해 시·도지사에게 있으나 배출시설을 다른 시·도로 이전하거나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·도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된 때에는 징수권을 다른 시·도지사에게 이관할 수 있다. 부과금 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부과금 납부통지서,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
-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
- 검사성적서 사본

배출부과금 징수권을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납부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○ 징수유예

시·도지사는 부과금 납기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.

- 재해 또는 도난으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때
-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
-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-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

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일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의무

鄭國鉉

〈環境廳 振興協力課長〉

자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납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시·도지사가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징수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·도지사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.

○ 異議申請

사업자는 부과금 산정 기준의 잘못 적용등으로 인한 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·도지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의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다. 그러나 이의 신청은 부과금의 납부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○ 還給

사업자가 개선계획서상의 개선기간을 단축하여 개선 또는 이전하거나, 계산착오로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의 이행완료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청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환경청장의 환급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급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거래구좌에 입금시킨다.

○ 追徵

사업자가 개선(이전)명령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이 불가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개선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받은 후 검체 채취를 하여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명령기간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부과금을 추가 징수한다.

〈다음호에 계속〉